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31 발의연월일: 2020. 12. 30.

발 의 자: 송갑석·김철민·문진석

안호영 • 윤영덕 • 이수진

이형석 • 인재근 • 장철민

정춘숙 · 조오섭 의원

(11인)

제안이유

연구개발특구가 기존 산업단지와 중첩 지정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법의 법률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산업단지 관리체계를 유지하고자 함(안 제3조, 제34조, 제35조).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특구법 제3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특구관리계획이 우선함을 규정하면서, 제35조제2항에서 산업시설구역을 세분(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할 수 있도록 하되, 제43조제4항에서 연구개발특구내 산업시설구역은 산업집적법을 준용하여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나. 이는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되던 기존 산업단지에 연구개발특구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의 배제, 별도의 산업시설구역 세분화 및 관리체계가 적용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일관성 있는 산업단지 관리의 저해 요소로 작용될 여지가 있음.
 - 1) 산업집적법 제33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은 용도구역 설정(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복합구역) 및 용도구역별 입주업종·시설 및 행위제한(산업용지 처분, 용도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기부 등)이 적용되나,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용도구역과 불일치하여 관리상 혼선 및 행정의 예측가능성 저해
 - 2) 산업집적법 제45조의2는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시 관리기본계획과의 조화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시 관리기본계획 승인 의제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개발특구법에는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시 특구관리계획의 승인 의제 조항이 없어 사업추진의 신속성결여 및 시간적・행정적 낭비가 예상되어 보완 필요
- 다. 연구개발특구는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사업화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되, 특구 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은 산업단지에 대한 규정의 명확성, 특구법의 산업집적법 준용 등을 고려할 때 산업단

지 관리에 관한 일반법인 산업집적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양 법률의 입법취지 달성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법률 제 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 군기본계획
-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 리기본계획
-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산업 단지 관리기본계획

법률 제17675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업집적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고 시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5조제2항 단서 중 "관계"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관계"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개 정 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 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 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 다만, 다음 각 호의 계획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 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 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 다. 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 · 군기본계획,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1 제1 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 본계획 및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제8조에 따른 국제과학비 즈니스벨트 기본계획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 <신 설> 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신 설> 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신 설> 호법 | 제16조에 따른 보호구 역등 관리기본계획

<신 설>

<신 설>

법률 제17675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특구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4조(특구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 (생 략)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시·도 지사의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구역 및 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시설구 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으로 세분할

-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 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_ 제8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 스벨트 기본계획
-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 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법률 제17675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 제45조의2제8 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승 인 · 고시된 때에는 제2항에 따 른 특구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 로 본다.
- 제35조(토지의 용도 구분 등) ① | 제35조(토지의 용도 구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 른 산업시설구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 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
록 관계
③ (현행과 같음)